#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32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 : 윤후덕 · 염태영 · 임오경

김정호 • 홍기원 • 이병진

박 정•전진숙•박민규

정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

소·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명진흥법」 제50조의 4에 따른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그 공제부금의 100분의 7(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특허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 해당 특허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특허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의3(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국내외 특허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조에서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의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10조의2, 제12조"를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2항"을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 3,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1조,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0조, 제12조제2항"을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 제12조제2항"을 "제10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특허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 제3조(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특허비용부터 적용하다.
- 제4조(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 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특 허정보 조사·분석비용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1조(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
	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
	030년 12월 31일까지 「발명진
	흥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허
	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공
	제부금에 대해서는 그 공제부
	금의 100분의 7(중견기업의 경
	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
	<u>제한다.</u>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u>한다.</u>
<u>&lt;신 설&gt;</u>	제11조의2(특허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
	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u><신</u>설>

조에서 "특허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 해당 특허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특허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 연금 등의 자산을 지원받은 금 액은 제외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한다.

제11조의3(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 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견기업이 국내외 특허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 사 및 분석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에서 "특허정보 조사·분석비 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 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세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 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 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 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 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 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 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 ②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 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다.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의2, 제11
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
<u>조</u>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3항 · 제4항, 제30조의4, 제31조제4 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 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 ⑥ (생 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 (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 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제2항
<u> </u>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 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 ② ~ ④ (생 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법인세와 같은법 제96조에 따른법인세에추가하여납부하는세액,제100조의32에 따른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과세특례를 적용하여계산

	2 ~ 4		행과 김	날음)	
제	) ]132조(초				갈하는
•	세액에				
	'' ' ''	'' -		0 1	'' '' /
	①				

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 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 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 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 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 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 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 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

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 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 2. (생략)
-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 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 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 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 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 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 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 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 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4. (생략)

② ~ ④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현행	 과 같음 	<del>)</del>	
			스, 저	 ]12조제 
② ~		현행과		) ]월공제
(1) -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 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 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 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 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 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 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 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

세10소, 세11소, 세11소의
<u>2, 제11조의3, 제12조제2항</u>

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 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 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 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 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 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

,
②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
1조의3, 제12조제2항
1조의3, 제12조제2항

12소제2	2항(송전	제37:	소의	개성
규정만	해당한	다)에	따라	공제
할 금약	백과 제1	항에	따라	이월
된 미공	공제 금의	렊이 중	복되는	: 경
우에는	제1항이	에 따라	라 이	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	하고
그 이욱	월된 미	공제 극	금액	간에
중복되	는 경우	에는 '	먼저	발생
한 것부	나터 차례	대로 -	공제한	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